

# 대학원 건축학과 내규

제정 2019. 8. 1.  
개정 2024. 11. 18.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 건축학과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에 적용되며, 석·박사통합 과정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제 2 장 일반전형

제3조 (지원자격)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1.18.)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신설 2024.11.18.)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신설 2024.11.18.)
3. 석·박사 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24.11.18.)

제4조 (지원구비서류)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1.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신설 2024.11.18.)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신설 2024.11.18.)
3. 대학성적증명서(신설 2024.11.18.)
4. 학업 및 연구계획서(본 대학원 소정양식)(신설 2024.11.18.)
5. 군위탁 추천자가 아닌 현역군인은 부대장 승인서(신설 2024.11.18.)
6.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서류(신설 2024.11.18.)

제5조 (전형방법 및 기준) ①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필답시험과 면접고사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행을 위해서는 학과(전공)내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②서류평가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신설 2024.11.18.)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신설 2024.11.18.)
2.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신설 2024.11.18.)
3. 기타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서류(신설 2024.11.18.)

③면접고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신설 2024.11.18.)

1. 전공에 대한 지식(신설 2024.11.18.)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신설 2024.11.18.)
3. 전공에 대한 적성(신설 2024.11.18.)
4. 기타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24.11.18.)

④예·체능계 학과는 면접고사 대신 전공별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4.11.18.)

제6조 (전형시기) 일반전형은 수시모집으로 하여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시로 시행하되, 기간을 정하여 입학일 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4.11.18.)

제7조 (평가) 일반전형 수시모집의 평가는 학과별로 정해진 내규(평가기준 및 원칙, 평가방법)에 따른다.(신설 2024.11.18.)

제8조 (합격사정) 일반전형 수시모집의 합격사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4.11.18.)

1. 학과 사정 : 각 학과에서 정한 입학전형을 평가기준 및 사정원칙에 따라 학과별 3인의 전임교원이 평가하고 날인한 후, 평가한 평점포 관련 서류를 대학원으로 송부한다.(신설 2024.11.18.)
2. 대학원위원회 사정 :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송부한 평점포와 종합평점포를 사정하여 합격 여부를 확정한다.(신설 2024.11.18.)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 합격자를 최종 확정한다.(신설 2024.11.18.)

### 제 3 장 특별전형

제9조 (전형범위) 대학원 입학 특별전형에서 선발하는 계열별 정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4.11.18.)

제10조 (지원자격) ①대학원 입학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1.18.)

1. 석사학위과정 : 제5조 제1호의 자격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신설 2024.11.18.)
  - 가. 대학과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신설 2024.11.18.)
  - 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신설 2024.11.18.)
  - 다.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국·공립기관의 임직원(신설 2024.11.18.)
2. 박사학위과정 : 제5조 제2호의 자격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신설 2024.11.18.)
  - 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신설 2024.11.18.)
  - 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 중인 자(신설 2024.11.18.)
  - 다.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국·공립기관의 임직원(신설 2024.11.18.)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24.11.18.)

제11조 (지원구비서류) 대학원 입학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제7조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1. 경력증명서(해당자)(신설 2024.11.18.)
2. 재직증명서(해당자)(신설 2024.11.18.)
3. 추천서(신설 2024.11.18.)

제12조 (전형방법) 대학원 입학 특별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에 의한다.(신설 2024.11.18.)

1. 서류평가(신설 2024.11.18.)
  -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신설 2024.11.18.)
  - 나. 경력 및 재직사항(신설 2024.11.18.)
  - 다. 추천서(신설 2024.11.18.)
  - 라.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24.11.18.)
2. 면접고사(신설 2024.11.18.)
  - 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신설 2024.11.18.)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신설 2024.11.18.)
  - 다.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24.11.18.)

제13조 (배점 및 평가) ①대학원 입학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1.18.)

- 1. 서류평가 : 100점 만점(신설 2024.11.18.)
  - 2. 면접고사 : 100점 만점(신설 2024.11.18.)
  - ②제1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신설 2024.11.18.)
- 제14조 (전형위원회 구성) ①특별전형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학과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 ②전형위원회는 학과주임교수가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형을 실시하며 학과별 전형회의록을 작성하여 평점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 제 4 장 편 입 학 전 형

- 제15조 (지원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신설 2024.11.18.)
  -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신설 2024.11.18.)
- 다만,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공히 건국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 재적자는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24.11.18.)

- 제16조 (지원 구비서류) 대학원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 1. 석사학위과정(신설 2024.11.18.)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신설 2024.11.18.)
    - 나. 대학졸업증명서 1통(신설 2024.11.18.)
    -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신설 2024.11.18.)
    - 라.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신설 2024.11.18.)
  - 2. 박사학위과정(신설 2024.11.18.)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신설 2024.11.18.)
    -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통(신설 2024.11.18.)
    - 다. 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신설 2024.11.18.)
    - 라.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신설 2024.11.18.)

- 제17조 (전형방법 및 기준) ①대학원 편입학 전형방법은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에 의한다.(신설 2024.11.18.)
- ②서류평가는 다음의 각호로써 행한다.(신설 2024.11.18.)
    -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신설 2024.11.18.)
    - 2. 학업계획(신설 2024.11.18.)
    - 3.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24.11.18.)
  - ③면접고사는 다음의 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 1.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신설 2024.11.18.)
    -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신설 2024.11.18.)
    - 3.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2024.11.18.)

제18조 (배점 및 평가) ①대학원 편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1.18.)

1. 서류평가 : 100점 만점(신설 2024.11.18.)
2. 면접고사 : 100점 만점(신설 2024.11.18.)

②서류평가와 면접고사에 대한 평가는 전형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신설 2024.11.18.)

제19조 (전형시기) 대학원 편입학전형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신설 2024.11.18.)

## 제5장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제20조 (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11.18.)

제21조 (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4.11.18.)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신설 2024.11.18.)
2. 출신대학 교수추천서(소정양식) 2부(신설 2024.11.18.)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각 1통)(신설 2024.11.18.)
4. 대학성적증명서 1통(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신설 2024.11.18.)
5. 해외거주 사실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용) 1통(신설 2024.11.18.)
6. 본인 및 보호자(부, 모) 외국인 증명서 각 1통(신설 2024.11.18.)
7. 신원보증서(소정양식) 1통(신설 2024.11.18.)
8. 본인 호적등본(한국계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 1통(신설 2024.11.18.)
9. 본인 여권 사본 1통(반드시 학교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신설 2024.11.18.)
10.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1통(신설 2024.11.18.)
11.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신설 2024.11.18.)
12. 기타 출입국 심사에 관련된 서류(신설 2024.11.18.)

제22조 (전형방법) ①서류평가 및 면접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및 기타 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 지원을 하는 경우 서류평가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 선발하고, 면접고사 후 최종 선발한다.(신설 2024.11.18.)

②예·체능계 학과는 서류평가, 면접고사 외에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4.11.18.)

제23조 (전형시기) 외국인전형은 일반전형시기에 준하여 시행하되,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1.18.)

제24조 (기타) 국제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본교 부속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8.)

## 제6장 합격사정 및 입학등록

제25조 (합격사정) 대학원장은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과 입학시험 성적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신설 2024.11.18.)

제26조 (입학등록)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신설 2024.11.18.)

## 제 7 장 종합시험

제27조 (시험과목)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한다.

제28조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9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9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험위원)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 문항별배점, 평가기준 등을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

제31조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32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매학기초 2주 이내로 한다.

## 제 8 장 공개발표

제34조 (적용대상)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제35조 (발표시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실시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제36조 (발표공지) 공개발표의 제목, 일시, 장소 등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개발표 일주일 이전부터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 장소는 참관을 원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심사기준) 공개발표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한 명 이상의 건축학과 전임교수가 공개발표에 참관하여야 하며 그 참관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8조 (발표확인) 공개발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요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 장 연구실적

제39조 (박사과정)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학진등재지 논문 2편 또는 SCI(E) 논문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발표하여야 한다. 게재 승인된 논문도 발표된 논문으로 인정한다. 연구실적은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요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발표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0조 (석사과정)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학술대회 논문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발표하여야 한다. 게재 승인된 논문도 발표된 논문으로 인정한다.

제41조 (실적확인)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학위청구논문심사 요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